

독일 산재보험제도의 적용방식과 시사점: 자원봉사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심으로

김 상 호*

◀ 요약 ▶

산재보험의 현안 이슈 중의 하나는 인적 적용 범위에 관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과 산재보험법상의 근로자 개념을 일치시켜 적용하면서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는 집단에 한정해서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임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왔다. 본 논문에서는 독일 사회법전과 문헌 연구를 통해 자원봉사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심으로 독일 산재보험의 적용 방식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독일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의료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자원봉사자, 공공기관과 교회의 자원봉사자, 시민보호를 위한 자원봉사자, 생명구조 활동자, 헌혈자 및 장기 기증자 등을 법률에 의한 당연가입대상자로 적용하고 있다. 국가가 공익 목적의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자원봉사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이러한 지원의 일환으로 자원봉사 활동 관련 재해 위험을 산재보험제도를 통해 보호하고 있다.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종속적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에서 출발하여 확대되는 배경과 과정을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독일 문헌에 기초해 정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독일 산재보험제도는 종속적 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사회적 취약집단에게 재해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사회복지 분야 자원봉사자에게 재

*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교수(socialpolicy@gist.ac.kr)

해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적용방법으로 산재보험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사회복지 분야 자원봉사자를 산재보험 당연가입대상자로 설정하여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주제어: 산재보험, 자원봉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독일제도

1. 문제의 제기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계기로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반면 재원 조달 가능성은 이에 미치지 못해 부족한 복지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와 조세포착률 제고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이것으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증세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와 복지 확대에 기인하는 재원조달의 어려움으로 공공복지체계를 이용한 복지 공급 확대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민간 봉사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복지 공급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민간 봉사활동의 중요성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어 건강보험 재정이 어려워져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¹⁾ 서구 선진국에서 이러한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자원봉사 활동을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 보호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험제도는 보편적 최저선을 보장하는 영국형 베버리지모델과 소득비례에 의한 적정 수준을 보장하는 독일형 비스마르크모델로 대별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사회보험 제도는 비스마르크모델에 기초하여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산재보험제도 역시 이의 예외가 아니다. 우리나라 산재보험제도는 독일의 산재보험제도에 기초하여 1964년에 도입되었고, 독일 제도는 우리나라 제도 발전 과정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면

¹⁾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2010’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 3,704만 명(인구의 72.9%)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60년에 2,187만명(인구의 49.7%)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 2011: 1).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현금급여 종류와 체계는 독일과 매우 유사하며, 2000년대 이후 독일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재활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13년에 예방요율제도를 도입할 때처럼 산재보험제도 개선 시에도 독일 제도는 중요한 해외사례로 활용되고 있다.²⁾ 이러한 점에서 독일의 산재보험제도를 벤치마킹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유익한 정책적 함의를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독일 제도를 검토하게 되었다.

1884년 7월 1일 세계최초로 산재보험제도를 도입한 독일에서는 자원봉사자에게 봉사활동 중의 재해, 직업병 및 출퇴근 상의 사고에 대해 산재보험 보호를 제공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선행연구로 오중은 외(2009)는 설문조사를 통해 자원봉사자의 실태를 파악한 후 자원봉사자에게 적용을 확대하는 5개 방안을 제안하였지만 구체성이 다소 결여된 한계가 있다. 자원봉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에 관한 연구가 미진한 실정이며, 이에 따라 본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2012년에 우리나라에서 1회 이상 활동한 자원봉사자 수는 1,280,381명이며, 이 중 남자가 772,741명으로 60.4%를 차지하였고 여자가 507,640명으로 39.6%를 차지하였다. 또한 현혈한 사람은 73,095명으로 조사되었다(보건복지부, 2013: 7-8). 자원봉사자는 2013년 현재 민영보험의 상해보험을 통해서만 재해에 대한 보호가 가능한데, 일정 연령 이후의 높은 사고율 때문에 가입연령에 제한이 있고, 일시금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소득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단기보장에 불과한 한계가 있다. 이와 달리 사회보험으로 운영되는 산재보험에서는 산재 발생 이전의 소득 수준을 보장하는 소득대체 기능을 하면서 연금 형태로 장기간 지급되기 때문에 소득보장 관점에서 유리하다.

제조업 비중이 감소하고 서비스업 비중이 증가하면서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영역에 있는 유사근로자(quasi employee,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증가하고 있다. 유사근로자는 인적 종속성은 느슨하지만 경제적으로 종속된 취업자로서 근로자에 비교할 만한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요청되는 자로 무엇보다 자신의 생존기반을 (i) 주로 1인의 업무위탁자에게서 (ii)일신전속적인 노무급부를 제공하는 (iii)계속적인 취업관계에 있는 자이다(박지순, 2005: 50). 대다수 자영업 분야의 시장진입에 대한 규제가 없는 우리나라에서 세계화와 경제구조의 소프트화가 진행될수록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자영업자 증가에 따른 문제가 중요한 사회이슈로 부각될 것이다. 그러나 산재보험

²⁾ 예방요율제도 도입방안에 대해서는 김상호(2010) 참조.

제도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적용 범위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자영업자로 확대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들을 보호하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면 산업구조 변화로 새로이 생성된 위험한 직종이지만 산재보험제도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직종을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산재보험제도 적용대상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확대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서 학술적으로 해외사례를 소개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선행연구로 박찬임(2002)은 이들을 특별조치를 통해 산재보험에 강제 적용하고, 사업주가 모든 보험료를 부담하되 그에 대한 보상으로 사업주에게 조세 감면을 제공하거나 또는 종사자가 일부 보험료를 부담하는 복수안을 제안하였다. 윤조덕 외(2004)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산재보험에 적용하기 위해 적용대상의 선정방식, 보험료 납입주체, 가입방법 및 법 규정 방식을 제시하였다. 이승렬 외(2005)는 윤조덕 외(2004)의 연구에서 부족했던 재해인정기준과 보상 관련 문제를 다루었다. 윤조덕(2011)은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특례제도 확대를 통해 유사자영업자 등을 가입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윤조덕(2012)은 독일, 일본 및 한국의 적용범위를 비교한 후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윤조덕(2012)을 제외한 기존 연구는 해외사례에 대한 심층 분석이 결여된 상태에서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한 한계가 있으며, 윤조덕(2012)에서는 독일 현행 제도의 적용범위를 상세히 설명한 반면 가입대상이 확대된 배경과 과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한계가 있다.

가입자 범위는 산재보험제도의 이슈 중의 하나이다.³⁾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문)과 산재보험법상의 근로자 개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2항, 앞으로 산재보험법으로 통칭)을 일치시켜 적용하면서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제기된 집단에 한정해서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임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왔다. 김형배 외(2004)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2분법적 체계에서 탈피하여 근로자, 유사근로자 및 사용자의 3분법적 체계로 바꾸고, 유사근로자에 대해 ‘개별근로관계법 규정의 부분 적용 및 집단적 근로관계법 전면적용’을 통해 보호를 강화하자고 주장하였다. 장의성(2005)은 한걸음 더 나아가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사용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³⁾ 다른 쟁점에 대해서는 박지순(2011) 참조.

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경우 이를 판단할 법적 기구를 고용노동부에 설치하여 법원 판결 이전 상태에서 오는 법적 불안정성을 방지할 것을 제안하였다. 김진수 외(2009)는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한 개념으로 노동법에서 사용하는 개념을 사회보험에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보험 운용의 문제와 그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김진수 외(2012)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독일 및 스위스에서는 유사근로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할지의 여부가 유사근로자를 근로자로 볼 것인가에 대한 법적 판단에 기초하며,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자와 동일한 보험료 부담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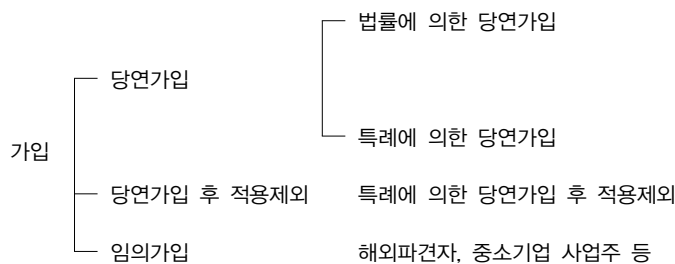
자원봉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적용대상을 자원봉사자로 확대한 배경과 적용 당시의 법률 규정을 포함하는 해외사례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가 아직 없고,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독일에서의 적용방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국내에 소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인식하고 독일 사회법전(주로 사회보험 공통규정에 관한 사회법전 4편과 산재보험제도를 규정한 사회법전 7편)과 문헌 연구를 통해 자원봉사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심으로 독일 산재보험의 적용 방식을 고찰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적용방식을 살펴본 후 제3장에서 독일의 산재보험 적용방식을 자원봉사자 위주로 분석하였다. 이어서 제4장에서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에서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및 간병인 중심으로 독일의 산재보험 적용방식을 기술하였다. 제5장에서는 독일 제도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 우리나라의 산재보험 적용방식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인적 적용 방법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그림 1 참조). 첫째, 법률에 의한 당연가입 방법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다(산재보험법 제6조). 산재보험법에서 근로기준법의 엄격한 근로자 정의(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적용함에 따

라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취업자뿐만 아니라 가구 내 고용활동과 상시근로자 1명 미만 사업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문 및 제5문). 둘째, 부진정 관계에 대한 특례에 의한 당연가입 방법으로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산재보험법 제123조 제1항)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산재보험법 제126조)를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보는 것이다.⁴⁾ 셋째, 특례에 의한 당연가입과 본인 신청을 통해 적용제외 될 수 있는 것이다(산재보험법 제125조). 이의 적용대상은 동법에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주로 하나의 사업에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타인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동법 제125조 제1항).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적용을 희망하지 않으면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는데(동법 제125조 제2항), 2013년 기준으로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6개 분야로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운전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및 퀵서비스기사이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⁵⁾ 넷째, 특례에 의한 임의가입 방법으로 해외파견자(산재보험법 제122조)와 중소기업 사업주(산재보험법 제124조 제1항)가 적용대상이다. 2000년 7월 1일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공단 승인을 통해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2013년 현재 근로자수 50인 미만의 중소기업 사업주뿐만 아니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건설기계사업 및 퀵서비스업을 하는 1인사업주를 중소기업 사업주로 인정하고 있다.⁶⁾

[그림 1]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적용 방법



퀵서비스기사의 경우 전속성이 있으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방식(동법 제125조 제1

4) 근로관계에 있지 않지만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집단을 당연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다.

5) 택배기사와 퀵서비스기사는 시행령 개정(2011년 12월 30일)을 통해 2012년 5월 1일부터 적용되었다.

6) 전속성이 없는 퀵서비스기사는 시행령 개정(2011년 12월 30일)을 통해 2012년 5월 1일부터 적용되었다.

항)으로, 전속성이 없으면 중소기업 사업주 방식(동법 제124조 제1항)으로 적용하고 있다. 한편 임의가입대상자의 경우 본인이 모든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반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절반씩 보험료를 부담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호근 외(2008)는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애니메이터, 텔레마케터, 덤프트럭기사 및 화물운송차주를 대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70만-100만 명으로 추정하였다.⁷⁾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주에의 종속성, 불안정한 취업 및 높은 사고발생률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존재하지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어서 대부분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처럼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업무상 재해에 대해 보호받지 못하는 근본적 이유는 산재보험법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을 적용하면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계층에 한정해 특례규정을 통해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현행의 인적 적용 방식에 있다. 비록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아니지만 근무조건과 경제적 종속성이 근로자보다 열악할 수도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되어 있다.⁸⁾

현재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주로 하나의 사업에 지속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1인사업주이면서 시행령에 명시된 6개 직종으로 제한되어 있다. 기존 방식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산재보험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경우 다음의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해당 집단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높은 행정비용과 이익집단 간의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 둘째, 퀵서비스기사처럼 복수의 사업장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전속성이 없는 1인사업주가 있으며, IT 기술의 발달로 이들의 비중이 증가할 것이다. 더욱이 전속성이 없는 1인사업주에게 중소기업 사업주 방식을 통해 임의가입토록 하여 모든 보험료를 부담토록 하는 것은 당사자의 제한된 부담능력 때문에 적용 확대에 한계가 있다. 즉 이들은 보험료 부담 때문에 가입을 기피하게 되며, 그 결과 취약계층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 셋째, 사업주를 특정하기 힘든 직종 종사자에게 산재보험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우며, 이의 예로 간병인과 대리운전기사가 있다.

7)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는 2013년 기준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약 25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8) 산재보험과 달리 고용보험에서는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 한나라당 대선공약에 포함되어 있어 멀지 않은 시점에 적용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3. 독일의 산재보험 적용방식: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산업부문 산재보험조합(gewerbliche Berufsgenossenschaft)이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에 해당하는데, 2008년 10월 30일 입법된 산재보험 현대화법 규정에 따라 통합되어 9개 조합으로 축소되었다(사회법전 7편 제222조 제1항). 산업부문 산재보험조합의 특징 중의 하나는 노사 자치운영이며, 노사대표로 구성되는 대의원총회에서 조합운영에 중요한 사항인 정관, 보험료율 산정 시의 위험등급 및 산재예방규정 등을 결정한다. 독일의 산재보험 적용방법은 법률에 의한 당연가입, 정관에 의한 당연가입 및 임의가입으로 분류할 수 있다. 법률에 의한 당연가입은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가장 큰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사회법전 7편(산재보험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다. 법률에 의한 당연가입 적용대상은 다시 진정 보험관계(echte Unfallversicherung)와 부진정 보험관계(unechte Unfallversicherung)에 있는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다(그림 2 참조).⁹⁾

진정 보험관계에 있는 사람은 사업주 책임배상을 대체하는 사업장 산재보험 성격을 가지는 사람이며 취업자와 취업자처럼 보호 가치가 있는 자(vergleichbar Schutzwürdige)로 분류할 수 있다. 진정 보험관계에 있는 사람은 산재보험제도 도입 초기부터 적용대상으로 고려했던 그룹이며, 종속적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오늘날에도 산재보험의 핵심 분야이다. 1884년 7월 1일 도입된 산재보험법의 가입대상자는 1871년 도입된 제국책임배상법(Reichshaftpflichtgesetz) 적용대상자로 제한되었고, 산재인정 범위를 사업장 내의 산재사고로 제한하였다. 즉 제도 도입 시 사업장 산재보험(Betriebsunfallversicherung)으로 사업장의 행정업무를 제외한 생산업무 위주의 업무분야별 가입방법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6차 산재보험법 개정을 통해 인별 산재보험(Personenunfallversicherung)으로 변경(1942년 3월 9일)되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취업자 유사자(Wie-Beschäftigte)가 가입대상이 되었으며, 특정 사업장에서의 지속적 취업이 산재보험 가입을 위한 전제조건에서 제외되었다.¹⁰⁾ 즉 사업장의 목적에 부합하는 행동을 일시적으로 할 경우에 사업장 외부 사람도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Schulin,

⁹⁾ 한국과 독일의 당연가입대상자를 비교한 연구로 윤조덕(2012) 참조.

¹⁰⁾ 이는 §537 RVO idF durch 6. UVÄndG에서이다(Molkentin, 2006: 20).

1996: 307).

취업자(Beschäftigte)는 산재보험의 가장 큰 가입그룹이다.¹¹⁾ 취업(Beschäftigung)은 특히 근로관계에 있는 종속적 노동이다(사회법전 4편 제7조 제1항 제1문). 취업에 대한 판단지표는 지시에 따른 업무수행(Tätigkeit nach Weisungen)과 지시자 노동조직에 편입(Eingliederung)이다(동법 제7조 제1항 제2문). 따라서 취업은 업무의 내용, 실행방법, 시간 및 장소 등에 대하여 종속된 형태로 수행하면서 지시자의 사업조직에 편입된 노동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근로관계가 취업을 위한 강제적 요건이 아닌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취업자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에 위치하는 사람을 당연 가입대상자로 포섭할 수 있으며, 외관자영업자(Scheinselbständige)처럼 취업자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은 직종에 대해서 독일연방연금공단(Deutsche Rentenversicherung Bund) 소속의 지위확인소(Clearingsstelle)에서 지위확인절차(Verfahren zur Statusfeststellung)를 통해 당연가입대상자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취업자처럼 보호가치가 있는 자는 취업 관련자, 특정 사업주 및 취업자 유사자로 분류할 수 있다(그림 2 참조). 취업 관련자에는 직업훈련생과 장애인전용사업장에 취업한 장애인 등이 속한다. 또한 농업사업주 및 함께 일하는 배우자, 가내수공업자, 가내수공업 중개인 및 함께 일하는 배우자, 연안해역 자영선주 및 의료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의 독립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사회적 보호 필요성을 인정하여 특정사업주로서 당연가입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¹²⁾ 가내수공업자와 가내수공업 중개인 역시 자영업자이지만 주문자에 대한 높은 경제적 종속성 때문에 당연가입대상에 포함되었다.¹³⁾ 한편 취업자 유사자는 취업자는 아니지만 취업자처럼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며, 구체적 적용범위는 판례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취업자 유사자는 일시적으로 취업자처럼 활동하는 사람이며 스포츠클럽과 승마장의 자원봉사 코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처럼 취업자 유사자까지 당연가입대상에 포함시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보호하고 있다. 현실에서 취업자 유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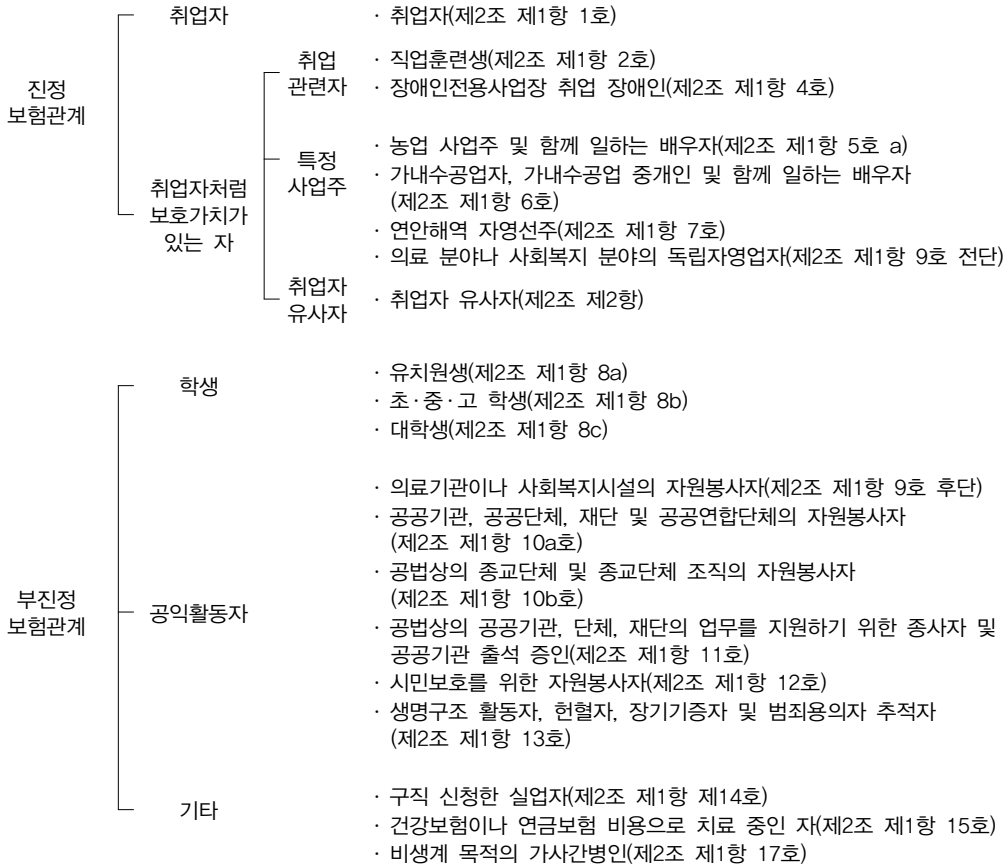
11) 우리나라에서 취업자는 근로자와 자영업자로 구성되어 있지만, 독일 산재보험법에서의 취업자는 이와 다른 개념이다.

12) 다만, 0.25헥타르 미만의 농업사업주는 신청에 의하여 당연가입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사회법전 7편 제5조).

13) 가내수공업자(Hausgewerbetreibende)와 가내수공업 중개인(Zwischenmeister)에 대한 정의는 각각 사회법전 4편 제12조 제1항과 제4항에 규정되어 있다.

로 산재를 당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1942년 법률 개정 시 이처럼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촘촘하게 보호망을 구축함으로써 국민에게 광범위한 산재보험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¹⁴⁾

[그림 2] 독일 산재보험의 법률에 의한 당연가입대상자



부진정 보험관계에 있는 사람은 종속적 고용관계에 있지 않지만 오랜 기간 다양한 입법목적에 따라 산재보험 보호가 확대된 그룹이다. 부진정 보험관계에 있는 그룹은 적용대상이 이질적이며 유일한 공통점은 입법자가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있는 집단으로 간주한 점이다(Schulin, 1996: 155). 산재보험제도 도입 당시의 적용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

¹⁴⁾ 취업자 유사자 산재보험 적용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Schulin(1996: 308-314) 참조.

던 부진정 보험관계에 있는 사람을 산재보험제도를 통하여 보호하게 된 이유는 100년 이상의 산재보험제도를 운영한 결과 이것이 공익이나 사회적 이유 등으로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집단에게 가장 적절하며 단순한 형태로 산재와 직업병에 대해 최상의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Lauterbach und Watermann, 1977: 132).

현행 부진정 보험관계에 있는 사람을 학생, 공익활동자 및 기타로 분류할 수 있는데,¹⁵⁾¹⁶⁾ 본 연구에서는 주로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공익활동자 위주로 분석하였다. 1928년 12월 20일의 법률 개정으로 생명구조 활동자 등이 적용대상이 된 것이 부진정 보험관계의 효시이다(Schulin, 1996: 157). 독일에서는 의료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자원봉사자, 공공기관과 교회의 자원봉사자, 시민보호를 위한 자원봉사자, 생명구조 활동자, 헌혈자 및 장기 기증자 등을 폭 넓게 법률에 의한 당연가입대상자로 적용하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다. 공익 목적의 자원봉사 활동을 국가가 적극 지원하며, 산재보험을 통한 보호는 이러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국가 지원 활동의 일부이다.

산재보험 보호가 자원봉사 활동으로 확대된 것은 다음의 4단계를 통해서이다.¹⁸⁾ 첫째, 1928년 12월 20일의 법률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의 자원봉사자로 확대되었다. 적용대상을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자로 확대한 것은 당시에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 활동 중 전염병에 걸릴 위험이 높았는데, 자원봉사자가 전염병에 감염될 경우 직업병으로 인정해 주기 위해서이다(Schulin, 1996: 331-332). 당시에 사회복지단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이 약 5백만 명으로 추산되었으며, 이들의 봉사 활동에 대해 산재보험 보호를 제공할 필요성을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이 주도하여 법률을 개정하였다.¹⁹⁾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진 사회복지시설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적용은 사회법전 7편 제2조 제1항 9호 후단에 규정되어 있다. 참고로 독일에서는 2,300만 명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15) 학생은 1971년 3월 18일의 법률 개정(RVO 제539조 제1항 14호)을 통해 당연가입대상이 되었으며, 재해보험 기능을 하는 학생재해보험(Schüler-Unfallversicherung)에 가입한다(Lauterbach und Watermann, 1977: 134).

16) 연방고용공단(Bundesagentur für Arbeit)에 구직 신청한 실업자는 1956년 12월 13일의 직장알선과 실업보험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Arbeitsvermittlung und Arbeitslosenversicherung) 개정을 통해 가입대상이 되었다(RVO 제 539조 제1항 4호)(Lauterbach und Watermann, 1977: 133).

17) 건강보험이나 연금보험 비용으로 치료중인 자는 1974년 8월 7일의 법률 개정을 통해 가입대상이 되었다(RVO 제539조 제1항 17호 a-c)(Lauterbach und Watermann, 1977: 134).

18) 공익활동자를 그룹별로 분류하여 법률에 의한 당연가입대상자가 된 역사적 배경과 법률개정 과정에 대해 주로 Molkentin(2006)을 참조하였다.

19) 이를 주도한 대표적인 국회의원은 Louise Schröder이다.

활동하고 있다(BMAS, 2011: 6). 산재사고나 직업병 발생 시 병원과 요양원의 자원봉사자에게 현물급여뿐만 아니라 휴업급여, 장애연금 및 유족급여로 구성되는 현금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처럼 근로자나 자영업자로 소득이 있었던 자원봉사자의 경우 요양치료 기간에 임금대체 기능을 하는 휴업급여를 지급한다.²⁰⁾ 국공립 의료시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해 공공산재보험조합에서, 민간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의료 및 사회복지 산재보험조합(Berufsgenossenschaft für Gesundheitsdienst und Wohlfahrtspflege)에서 관장하고 있다. 관장기구를 제외한 기타 전달체계는 다른 가입자와 동일하다.

둘째, 나치 통치기간인 1939년에서 1942년 기간에 적용대상을 확대하였다. 우선 1939년 2월 17일의 법률 개정을 통해 범죄용의자 추적자에게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확대되었다. 이어서 1942년 3월 9일의 법률 개정을 통해 공인 헌혈증명서를 소지한 상태에서 무상으로 헌혈하는 사람과 취업자 유사자에게로 확대되었다.²¹⁾ 헌혈은 특별한 형태의 인명구조로 인정되었으며, 1942년 8월 20일의 법률 개정(6. UVÄndG)을 통해 헌혈한 모든 사람에게로 산재보험 보호가 확대되었다. 이처럼 적용조건을 완화한 것은 재난 발생 시 공인 헌혈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헌혈하여도 그 대가로 헌혈자에게 실비를 지급하던 관행을 제도에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나치 통치 기간에 당연가입대상자가 크게 확대된 것은 흥미로운 현상으로 나치 통치를 지원한 측면이 있었지만, 현행의 산재보험법에서 이들을 가입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있다. 2차 세계대전 후 산재보험 보호가 장기기증자에게로 확대되었는데(§539 Abs. 1 Nr. 10 RVO), 이는 장기기증과 이식이 확산되는 추세에 있었으며 장기기증이 공익을 위한 희생 관점에서 헌혈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Schulin, 1996: 335).

셋째, 1963년 4월 30일의 산재보험 신규정법(Unfallversicherungs-Neuregelungsgesetz)에 의해 정부와 교회 같은 공법상의 기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전형적인 자원봉사자에게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다시 세 그룹으로 구성되었다.

²⁰⁾ 그러나 소득이 없었던 자원봉사자에게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²¹⁾ 헌혈자는 §537 Nr. 5 RVO idF durch 6. UVÄndG에 의해 가입대상자가 되었으며, 현재 사회법전 7편 제2조 제1항 13b를 적용받는다. 취업자 유사자는 §537 Nr. 10 RVO idF durch 6. UVÄndG에 의해 가입대상자가 되었고, 현재 동법 제2조 제2항 1문을 적용받는다.

-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공법상의 재단을 위한 자원봉사자²²⁾
- 직업훈련기관의 명예직 교사²³⁾
- 증거 수집 목적으로 출석한 증인²⁴⁾

1942년 3월 9일 적용된 법률 규정에 국가 업무 지원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 보호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규정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적용대상이 이러한 자원봉사자로 확대되었다(Schulin, 1996: 355). 이 산재보험 신규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자(선거지원자, 지방자치위원회 참여자, 명예직 판사, 의원 등)뿐만 아니라 교회의 핵심분야에 종사하는 자원봉사자와 의사단체, 상공인단체, 수공업자단체에 종사하는 자원봉사자도 산재보험 보호를 받게 되었다(Schulin, 1996: 357).

넷째, 2004년 12월 9일의 법 개정을 통해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자원봉사자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이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체육계에서 선출직 명예직 종사자를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오랜 기간 요구했으며, 이는 공익조직의 선출직 명예직 종사자에 대한 임의가입 규정으로 입법화되었다(사회법전 7편 제6조 제1항 3호). 또한 연방회의의 ‘시민활동의 미래’ 앙케트위원회(2002년 6월 30일의 BT-Drs. 14/8900)에서 시민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세법상 공익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산재보험 보호를 제공할 것을 건의하였다(Eichenhofer und Werner, 2010: 17).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공익조직의 선출직 명예직 종사자(동법 제6조 제1항 3) 및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 상부조직의 명예직 종사자(동법 제6조 제1항 4)가 임의가입대상이 되었다. 체육계 주도로 이루어진 스포츠클럽 명예직 종사자에 대한 임의가입 적용 규정을 이용하여 현재 많은 스포츠클럽에서 명예직 종사자를 산재보험에 가입시키고 있다. 참고로 스포츠클럽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선출직 명예직 종사자에 대한 보험료는 현재 스포츠클럽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다.

22) §539 Abs.1 Nr. 13 RVO idF durch UVNG에 의해 가입대상자가 되었으며, 현재 사회법전 7편 제2조 제1항 10a와 10b를 적용받는다.

23) §539 Abs.1 Nr. 14 RVO idF durch UVNG에 의해 가입대상자가 되었으며, 현재 동법 제2조 제1항 10a를 적용받는다.

24) §539 Abs.1 Nr. 13 RVO idF durch UVNG에 의해 가입대상자가 되었으며, 현재 동법 제2조 제1항 11b를 적용받는다.

[표 1] 정관에 의한 당연가입 사업주 적용 내용

산재보험조합	당연가입대상자	年소득기준액	급여 내용
에너지, 섬유, 전기 및 언론제품 산재보험조합 (BG ETEM)	정관 제3조 제1항 4호와 5호의 사업주. 단, 자기 기업에서 연 100일(1일 8시간) 미만 일하는 사업주는 신청을 통해 적용 제외 가능	표준소득의 70%. 단, 신청을 통해 年소득상한액까지 상향 조정 가능	요양급여와 직업재활급여는 보험사고 발생일부터 지급. 현금급여는 보험사고로 노동불능이 의학적으로 확정된 날부터 지급
식품 및 요식업 산재보험조합 (BG Nahrungsmittel und Gastgewerbe): 육류업 산재보험조합 분야	사업주와 함께 종사하는 배우자. 단, 주업으로 근로자로 활동하면서 月총임금이 최소가입액의 1/12 초과 시 신청을 통해 적용 제외 가능	표준소득의 80%. 단, 신청을 통해 年소득상한액까지 상향 조정 가능	상동
원자재 및 화학산업 산재 보험조합 (BG RCI): 피혁업 산재보험조합 분야	사업주와 함께 종사하는 배우자. 단, 신청을 통해 적용 제외 가능	표준소득의 80%. 단, 신청을 통해 年소득상한액까지 상향 조정 가능	상동
상업 및 배송 산재 보험조합(BG Handel und Warendistribution): 소매업 산재보험조합 분야	사업주와 함께 종사하는 배우자	연 20,000 유로. 단, 신청을 통해 年소득상한액까지 상향 조정 가능	사업주와 함께 종사하는 배우자는 산재보험법 제26조 이하 규정에 근거하여 급여 지급. 휴업급여는 노동불능 초기 3주 간 미지급
의료 및 사회복지사업 산재보험조합(BGW)	미용업소 사업주와 함께 종사하는 배우자. 단, 경미한 활동을 할 경우 신청을 통해 적용 제외 가능	표준소득의 60%. 단, 신청을 통해 年소득상한액까지 상향 조정 가능	요양급여와 직업재활급여는 보험사고 발생일부터 지급, 현금급여는 보험사고로 노동불능이 의학적으로 확정된 날부터 지급
운송 및 교통업 산재보험조합 (BG-Verkehr)	정관 제3조 제1항 1번~3번 기업의 사업주와 수로안내인. 단,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신청을 통해 적용 제외	연 20,000 유로. 단, 신청을 통해 年소득상한액까지 상향 조정 가능	상동

자료: Rundschreiben 0127/2010, Unternehmensversicherung kraft Satzungsbestimmung(SGB VII §3).

아울러 사회복지단체와 사회복지시설의 자원봉사자는 동법 제2조 제1항 9호 후단에 의한 당연가입대상자이다(BMAS, 2011: 7). 또한 의료 분야나 사회복지 분야에 독립자영업

자로 종사하는 간병인, 조산원, 마사지사, 치료체조교사 및 언어치료교사뿐만 아니라 1인 사업주 간병인은 동법 제2조 제1항 9호 전단에 의한 당연적용대상이다(DGUV Rundschreiben 0508/ 2009, 2009년 9월 2일).

정관에 의한 당연가입대상자는 조합이 정관 규정을 통해 적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며, 현재 사업주 및 함께 종사하는 배우자, 사업장 체류자, 명예직종사자 및 시민 참여자 등이 적용대상이다(동법 제3조). 한편 정관에 의한 당연가입대상자에 사업주를 포함하고 있는 조합은 규제완화 추세를 반영하여 감소하고 있다(표 1] 참조). 정관에 의한 임의가입대상자는 사업주 및 함께 종사하는 배우자, 공익조직(예: 스포츠클럽, 의료시설, 종교기관)의 선출직 명예직 종사자,²⁵⁾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 상부조직의 명예직종사자, 정당의 명예직종사자 등이다(동법 제6조). 임의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모든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점에서 우리나라 규정과 동일한 반면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해당분야 모든 사업주가 적용대상인 점에서는 우리나라 규정과 차이가 있다. 임의가입자에게도 당연가입 대상자와 동일한 현물급여가 제공되는 반면 현금급여는 보험료 납부 시의 가입액에 기초하여 산정되는 점에서 우리나라 규정과 동일하다.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1)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

함부르크에 본부를 둔 운수업 산재보험조합은 1886년 7월 1일 설립되었으며, 2005년 1월 1일 내륙선반운송업 산재보험조합과, 이어서 2010년 1월 1일 해양업 산재보험조합과 통합하여 운송 및 교통업 산재보험조합(BG für Transport und Verkehrswirtschaft)이 되었다. 동 조합의 관할영역은 전체 육상도로운송, 공중운송, 내륙선박운송 및 해상운송 기업이며(동 조합 정관 제3조 제1항 1호-4호), 정관에 의한 당연가입대상으로 육상도로운송, 공중운송, 내륙선박운송의 사업주와 수로안내인을 적용하고 있다(정관 제44조 제1항). 그

²⁵⁾ 이들의 가입배경에 대해서는 앞의 기술 참조.

러나 이들 사업주와 수로안내인은 신청 시 적용제외가 가능하며, 산업부문 산재보험조합 중 유일하게 업종 전체의 사업주를 당연가입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표 1] 참조). 동 조합의 대표적인 1인사업주 업종은 택시, 택배와 세차다.

독일에서 택시회사, 택배회사와 세차장을 운영하려면 상공업관청(Gewerbeamt)에 등록해야 한다. 택시를 1인사업주로 운전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택시면허를 받은 후 택시 회사를 상공업관청에 등록하고 직접 운전하여야 한다. 또한 대다수 택배회사 역시 1인사업주로 운영되고 있다. 사업주와 근로자 구분 방법으로 동 조합에서는 상공업관청에 등록한 사람은 사업주로, 여타의 종사자는 근로자로 가입시키고 있다. 이처럼 근로자성 존재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신규가입 시 근로자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자동차 교통이 혼잡한 일부 대도시에서 자전거를 이용한 배송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오토바이를 이용한 퀵서비스는 없기 때문에 퀵서비스기사 역시 없다. 또한 일부 택시회사에서 대리운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문화적 특성 때문에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며, 우리나라 형태의 대리운전기사는 없다. 이상을 요약하면 독일에는 우리나라 형태의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 같은 직종이 없으며, 택배기사의 경우에도 1인사업주와 근로자를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징표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성과 관련한 문제가 현실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2) 간병인

의료 및 사회복지 산재보험조합(Berufsgenossenschaft für Gesundheitsdienst und Wohlfahrtspflege)은 함부르크에 본부를 둔 기관으로, 관할영역은 병원, 동물병원 및 복지사업 기업, 의료 분야 실험실 및 연구기업, 미장원과 미용실 등이며(동 조합 정관 제3조 제1항) 재정 상태가 양호하여 타 조합과의 인수 또는 합병을 하지 않은 유일한 조합이다. 모든 간병인은 산재보험 당연가입대상자인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근로자로 활동하는 간병인은 취업자로서 사회법전 7편 제2조 제1항 1호에 의한 당연가입대상자이며, 전문가격증이 있는 1인사업주 간병인은 독립자영업자로서 제2조 제1항 9호 전단에 의한 당연가

입대상자이며, 비영리 목적의 가사간병인은 제2조 제1항 17호에 의한 당연가입대상자이다(그림 2 참조). 간병인에 대한 관장기구는 취업 형태에 따라 상이하여 근로자로 활동하는 간병인과 1인사업주 간병인을 의료 및 사회복지사업 산재보험조합에서 관장하는 반면, 비영리 목적의 가사간병인과 지방자치단체 간병시설 종사자는 지방자치단체 산재보험금고(Unfallkasse)에서 관장하고 있다(DGUV Rundschreiben 0508/2009, 2009년 9월 2일). 참고로 독일의 병원과 요양원에서는 직원으로 채용된 사람만 요양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병원과 요양원의 모든 간병인은 근로자로 당연가입대상자이며, 1인사업주 간병인은 독립자영업자로서 주로 재가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995년 1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Pflegeversicherung)가 도입되었는데, 주로 가족을 돌보는 비영리 목적의 가사간병인이 새로이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Schulin, 1996: 386).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할 때 경제적 효율성 때문에 시설요양보다 재가요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재가요양 간병인이 증가하게 되어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들을 당연가입대상에 포함시켰다. 비영리 목적의 가사간병인에 대해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고 일반재원으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산재보험금고에 가입시키는 점이 흥미롭다(Schulin, 1996: 387).

3) 미니잡 취업자

게르하르트 슈뢰더(Gehard Schröder) 수상은 통일 후유증 등으로 발생한 심각한 노동시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02년에 Peter Hartz를 위원장으로 하는 일명 Hartz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동 위원회의 제안은 4개의 법률로 입법화되었다. 이 중 2003년 1월 1일 실시된 하르츠(Hartz) II 법률에서 높은 사회보험료와 세금 부담을 경감시켜 사회문제였던 장기실업자 수를 줄일 목적으로 저임금 취업자를 사회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독일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산재보험이 모든 취업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미니잡 취업자 역시 당연가입대상자이다. 일반 취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회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고 통합보험료징수처로 건강보험에서 징수하지만, 사회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미니잡 취업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적용되

지 않으며 사용자만 사회보험료를 부담하고 미니잡 센터에서 사회보험료를 일괄 징수하고 있다. 물론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사용자가 전액 보험료를 부담한다.

저임금 취업은 월평균 임금이 450 유로 이하인 직장(사회법전 4편 제8조 제1항 1호)인데,²⁶⁾ 산업분야 취업과 가사분야 취업으로 구분한다. 산업분야의 경우 근로자가 사회보험 당연적용대상인 주업이 없으면서 복수의 미니잡에 취업하면 임금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합산한 임금이 월 450 유로를 초과하면 해당하는 모든 미니잡이 사회보험 당연적용대상이 된다. 이와 달리 사회보험 당연적용대상인 주업이 있으면서 미니잡에 취업하면 첫 번째 미니잡은 사회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 이후의 미니잡에 대해서는 주업의 임금과 합산하여 월평균 임금을 산정한다.

가사분야의 가사사용인 미니잡은 가사 관련 일을 하면서 월평균 임금이 450유로 이하인 경우이다. 일반근로자의 경우 통합보험료징수처로 건강보험에 전자신고 하는 것과 달리 가사사용인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단순서식 형태로 미니잡 센터에 신고토록 하여 사용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산업분야 취업자의 경우 사용자가 산재보험조합에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재금고에서 관할하는 가사사용인의 경우에는 미니잡 센터에서 보험료를 대행하여 징수한 후 해당 공공산재금고에 이체하는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미니잡 취업자는 산재보험과 연금보험을 제외한 여타 사회보험 적용제외대상이다. 따라서 저임금 미니잡에 취업해도 산재보험과 연금보험 이외의 사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²⁷⁾ 미니잡 취업자가 일반근로자의 연금보험 보험료율(18.9%)과 미니잡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율(15%)의 차이(2013년 기준 3.9%)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면 모든 종류의 연금급여에 대한 수급권을 획득할 수 있다.²⁸⁾ 다만, 미니잡 취업자가 사업주에게 문서로 신청하면 연금보험에서 적용제외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사회법전 제6편 제6조 제1b항 제2문). 참고로 미니잡 취업자의 연금보험 적용제외 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사

26) 2003년 4월 1일에 월평균 325 유로에서 400 유로로, 2013년 1월 1일에 450 유로로 인상하여 적용대상을 확대하였다.

27) 2012년 12월 31일까지 미니잡 취업자는 사회법전 6편 제5조 제2항에 따라 연금보험 적용제외 대상자였다. 그러나 미니잡 취업자의 노후보장 문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2013년 1월 1일부터 연금보험 적용대상으로 변경되었다. 다만, 단기취업자는 이전과 동일하게 연금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28) 가사사용인 미니잡에 대해서도 연금보험이 적용되지만, 일반근로자의 보험료율(18.9%)과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율(5%)의 차이(2013년 기준 13.9%)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업주는 15%에 해당하는 연금보험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표 2] 참조).

[표 2] 취업 종류별 사회보험 보험료율 현황(2013년 3월 기준)

(단위: %)

	사회보험 당연가입 취업			미니잡 취업 (사업주)		
	사업주	근로자	소계	산업분야	단기취업	가사분야
연금보험	9.45	9.45	18.9	15.0	-	5.0
건강보험1)	7.3	8.2	15.5	13.0	-	5.0
노인장기요양보험	1.025	1.025	2.05	-	-	-
고용보험	1.5	1.5	3.0	-	-	-
산재보험2)						1.6
총괄세	-	-	-	2.0	-	2.0
U1 (질병 시 임금계속지급)				0.7	0.7	0.7
U2 (임신과 출산)				0.14	0.14	0.14
U3 (도산기금)				0.15	0.15	-
합계	19.275	20.175	39.45	30.99	0.99	14.44

- 주: 1) 당연가입 취업자에 대한 연금보험 보험료율은 19.6%에서 2013년 1월 1일부터 18.9% 하락.
 2) 당연가입 취업자에 대한 15.5%의 건강보험 보험료율은 2011년 1월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건강보험 조합 별로 상이하지만 미니잡 취업자에 대해서는 동일요율 적용.
 3)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율은 1.95%에서 2013년 1월부터 2.05%로 인상되었음. 단, 23세 이상으로, 자녀가 없는 근로자는 0.25%를 추가로 부담.
 4) 고용보험 보험료율은 2011년 1월부터 3.0%가 적용되고 있음.
 5) 산재보험조합과 위험등급에 따라 상이한 보험료를 적용하기 때문에 기입하지 않았음. 가사분야 미니잡 취업자는 공공산재보험조합에 가입하고 1.6%의 보험료를 적용.
 6) U1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며, 보험료율은 건강보험조합별로 상이.
 7) U2에 대한 보험료율은 건강보험조합별로 상이.

자료: <http://de.wikipedia.org/wiki/Sozialabgaben> 외에 다양한 자료에 기초하여 연구자가 작성.

5. 시사점

약 130년의 산재보험제도 운영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독일에서는 인적 적용대상을 종속적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에서 출발하여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근로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으로 확대하였다. 다양한 입법 목적 하에 종속적 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에게로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국민들에게 촘촘하게 갖춰진 산재보험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독일은 사회보험 형태의 산재보험제도를 통해 전체 국민에게 재해 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산재보험 선진국이다. 전체 국민에게 촘촘하게 재해 보호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독일 제도의 큰 장점이다.

독일 제도의 인적 적용 범위에 대한 분석에서 우리나라 산재보험제도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독일 제도는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회적 취약집단에게 재해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당연적용대상을 근로자로 제한하지 않고 취업자, 취업자처럼 보호 가치가 있는 자 및 공익활동자 등을 포함한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집단으로 확대한 독일 제도는 많은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재해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산재보험제도가 지향할 미래상이다. 독일 제도에서 당연적용대상을 종속적 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집단으로 확대한 것은 많은 국민에게 재해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제공한다.

둘째, 독일에서 종속적 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한 재해 보호를 사회보험으로 운영되는 산재보험을 통해 실시한 것은 이것이 가장 적절하며 단순한 형태로 재해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오랜 제도 운영을 통해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독일에서는 시민보호를 위한 자원봉사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분야 자원봉사자를 당연가입대상으로 하여 봉사활동 중 발생한 재해를 산재보험에서 보상하고 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에는 사회 안정에 기여한 개인이 공익활동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할 경우 국가가 보상하는 의사상자보호제도는 있지만 사회복지 분야 자원봉사자에 대한 재해 보상 제도는 아직 없다. 복지수요에 충당할 재원 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 분야 자원봉사 활성화는 복지재원 조달 문제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자원봉사자에게 재해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적용방법으로 산재보험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독일에서처럼 사회복지 분야 자원봉사자를 당연가입대상으로 설정하여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 산재보험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특례의 경우 종사자가 희망하면 적용제외가 가능함에 따라 실제 적용률이 약 10%에 불과하다. 따라서 대상자에게 적용제외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가입률이 저조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가입 형태가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로 독일에서는 2013년 현

재 약 2,300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공공복지제도가 담당하지 못하는 분야에서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 증진과 사회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넷째,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종사하는 분야의 경우 우리나라의 직종 변화 속도가 독일보다 빨라 우리나라에는 있지만 독일에는 아직 생성되지 않은 직종이 상당수 있어 벤치마킹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산재보험제도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함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데 있으며, 이는 향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 참고문헌 □

- 김상호 (2010). 산재보험 예방요율제도 도입방안, 사회보장연구, 26(2), 123-143.
- _____ (2011). 산재보험제도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회보장연구, 27(4), 225-246.
- 김진수·변영우·신혜리 (2009). 사회보험 대상자 개념 설정의 문제점과 개선에 관한 연구-노동법 개념의 사회보험 적용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5(3), 109-134.
- 김진수·정창률 (2012). 산재보험의 특수형태근로자 관리운영주체 설정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28(4), 185-206.
- 김형배·박지순 (2004). 근로자 개념의 변천과 관련법의 적용(유사근로자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한국노동연구원.
- 박지순 (2005). 독일의 유사근로자[특수형태고용종사자]의 유형과 노동법상의 지위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_____ (2011). 산재보험제도의 정책과제. 노동보험포럼, 4(2).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연구센터.
- 박찬임 (2002). 산재보험 적용확대 방안 연구 - 자영업자, 특수고용관계자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 윤조덕·김영문·이호근·권영준 외 (2004). 비정규직 근로자 산재보험 적용실태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확대. 한국노동연구원.
- 윤조덕 (2011). 산재보험 가입대상과 적용범위의 적절성 제고. 산재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와 미래구상. 박종희 외. 고용노동부 연구용역 보고서.
- _____ (2012). 산재보험 적용대상자 적용범위의 적절성 제고. 산재보험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연구. 박종희 외. 고용노동부 연구용역 보고서.
- 오종은·양재성 (2009). 무급가족종사자.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타당성 연구. 근로복지공단 노동보험연구원.
- 이승렬·권영준·금재호·이호근 (2005).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확대 연구[II], 한국노동연구원.
- 이호근·김영문·윤조덕·이영면·송보화·장상현·장혜현·한충현 (2008).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실태 및 다단계구조 집단갈등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고용노동부 연구용역 보고서.
- 장의성 (2005).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법적 보호방안 연구. 사회보장연구, 21(2), 133-167.
-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13). 사회복지 자원봉사 통계연보 2012.
- 통계청 (2011). 장래인구추계 2010-2060.
- Berufsgenossenschaft für Gesundheitsdienst und Wohlfahrtspflege(BGW) (2011). Satzung,
BG Verkehr (2010). Satzung der Berufsgenossenschaft für Transport und Verkehrswirtschaft.

-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BMAS) (2011). *Zu Ihrer Sicherheit*, Unfallversichert im freiwilligen Engagement.
- Eichenhofer, E. und Wenner, U. (2010). *Kommentar zum Sozialgesetzbuch VII, Luchterhand*.
- Lauterbach, H. und Watermann, F. (1977). *Unechte Unfallversicherung? Ein Beitrag zur rechtsdogmatischen und praktischen Abgrenzung der gesetzlichen Unfallversicherung vom sozialen Entschädigungsrecht*, in Grundlagen der Sozialversicherung : Festschrift für Kurt Brackmann zum 65. Geburtstag, Asgard-Verlag Hippe.
- Molkentin, T. (2006). *Unfallversicherungsschutz bei ehrenamtlicher Tätigkeit und bürgerschaftlichem Engagement: Entstehung, Dogmatik, Ausblick*, Die BG.
- Schulin, B. (1996). *Handbuch des Sozialversicherungsrechts, Band 2 Unfallversicherungsrecht*, Verlag C.H.Beck München.

Coverage Method in German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and Policy Implications: Focusing on Volunteers and Persons in Special Types of Employment

Kim, Sang Ho*

One of the current issues in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is about the coverage range. Korea uses the definition of worker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in Workers' Compensation Act and solved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coverage range of insurance group by the exceptional clause only for the groups which was raised about the need for the social protec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raw implications for solving problems which are associated with the coverage range of insurance group by reviewing the German literature. We focus on volunteers and persons in special types of employment. German government supports the activity of volunteers by providing with the protection service against the accidents. This paper shows how the coverage range is extended from the dependent employees in the introduction of the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to the people who need social protection focusing on the volunteers.

The implications of this research are following. First, German system shows that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can be extended to the groups which do not belong to the dependent employee but are worthy of protect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provide volunteers in the social welfare system with the protection service against the accidents and the statutory accident scheme is recommendable to use.

* Ph. D. Professor,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GIST College(socialpolicy@gist.ac.kr)

Third, volunteers in the social welfare system need to be compulsory insured.
Fourth, Korea should find their own way in solving problems associated with persons in special types of employment.

Key Words: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volunteer, persons in special types of employment, German system

◆ 2013.08.20. 접수 / 2013.09.21. 1차 수정 / 2013.09.27. 게재 확정